

 신안산대학교	외국인 어학연수생 운영위원회 규정	규 정 번 호 4-1-49 제 정 일 자 2022. 4. 21. 개 정 일 자 2024.4.15. 책임부서/팀·계 국제교류협력원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제1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외국인 어학연수과정으로 입학한 어학연수생과 관련된 제반사항 심의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위원회는 본교 외국인 어학연수생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한다.

제3조(구성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제교류협력원장으로 하고, 위원은 국제교류협력원 어학과정(한국어교육 과정포함) 전담강사 또는 본 대학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3.12.7., 2024.4.15.>
- ② 간사는 국제교류협력원 담당 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3.12.7., 2024.4.15.>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5조(임기)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

-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외국인 어학연수생(D4) 입학 및 졸업기준에 관한 심의
- ② 어학연수생의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
 1.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지원
 2. 입학전형관리 및 공정관리에 관한사항 지원
 3. 수료에 관한 사항지원
 4. 시험출제 및 평가 관리에 관한사항 지원
 5.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에 관한사항 지원
 6. 기타 어학연수생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

제8조(업무) 위원회에 관한 제반 업무는 국제교류협력원에서 수행한다. <개정 2023.3.30., 2023.12.7., 2024.4.15.>

제9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의 제3조(구성), 제8조(업무)는 202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